2021. 3 Vol.19

P&B Report

Policy & Business

정무위원회	사회연대기금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SAMPLE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집

08 **1. 구성**

11 **2. 관련법령**

II. 발의

16 **1. 발의 법률안 목록**

25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25 1) 사회연대기금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6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2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29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30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31 6) 탄소세법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32 7)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34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대표발의)

35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6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SAMPLE

Ⅲ. 소위원회

38 **1. 상정 법률안 목록**

49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49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0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55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57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Ⅳ. 상임위원회

60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80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81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85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2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94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SAMPLE

95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96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V. 본회의

98 **1. 상정 법률안 목록**

100 **2. 주요 법률안 소개**

100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별첨. 1. 용어해설

113 2. 국회일정표

SAMPLE

B&B Report

SAMPLE

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50 현원 49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17 비교섭단체 3



위원장
정성호

선 거 구 경기 양주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김원이
전남 목포시
초선(21대)



위원
김철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재선(20대, 21대)



위원
김한정
경기 남양주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박용진
서울 강북구을
재선(20대, 21대)



위원
백혜련
경기 수원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서동용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초선(21대)



위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정
초선(21대)



위원
신현영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양기대
경기 광명시을
초선(21대)



위원
양이원영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양향자
광주 서구을
초선(21대)



위원
오기형
서울 도봉구을
초선(21대)



위원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재선(20대, 21대)



위원
유정주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윤영찬
경기 성남시중원구
초선(21대)



위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초선(21대)



위원
이규민
경기 안성시
초선(21대)



위원
이소영
경기 의왕시과천시
초선(21대)



위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초선(21대)



위원
이정문
충남 천안시병
초선(21대)

SAMPLE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해식
서울 강동구을
초선(21대)



위원
임호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초선(21대)



위원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초선(21대)



위원
최종윤
경기 하남시
초선(21대)



위원
한준호
경기 고양시을
초선(21대)



위원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초선(21대)



위원
황운하
대전 중구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대구 달성군
재선(20대, 21대)



위원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초선(21대)



위원
박성민
울산 중구
초선(21대)



위원
박수영
부산 남구갑
초선(21대)



위원
박형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초선(21대)



위원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선(21대)



위원
서일준
경남 거제시
초선(21대)



위원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초선(21대)



위원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초선(21대)



위원
윤주경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재선(20대, 21대)



위원
정운천
비례대표
재선(20대, 21대)



위원
정찬민
경기 용인시갑
초선(21대)



위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18대, 19대, 21대)



위원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초선(21대)



위원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초선(21대)



위원
황보승희
부산 중구영도구
초선(21대)

SAMPLE

비교섭단체



위원
이은주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재선(20대, 21대)



위원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5선(15대, 16대, 17대, 18대, 21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교섭단체명	위원명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소위원		박홍근
		서영석
		윤준병
		이소영
	국민의힘	추경호
		임이자
		조해진

SAMPL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법령

구분		소관법률
예산회계관련법령	일반회계관련	1. 대한민국헌법
		2. 국회법
		3. 감사원법
		4. 감사원법
		5. 국가재정법
		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7.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8.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 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9.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10.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국가정보원법
		13. 한국은행법·시행령
		14.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1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1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7. 국유재산법·시행령
		1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회계관련법령	특별회계관련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3.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5. 등기특별회계법·시행령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시행령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금관령법령	교육부 관리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사학진흥기금)
	국가보훈처 관리기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보훈기금법·시행령 (보훈기금)

SAMPLE

구분		소관법률
기금관령법령	국방부 관리기금	1.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군인복지기금)
		2. 군인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기금)
	국토교통부 관리기금	1. 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금융위원회 관리기금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공적자금상환기금)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실채권정리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 (기술보증기금)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관리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관리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
		4.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복권기금)
		5. 사회기반기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평형기금)
	고용노동부 관리기금	1.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기금)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진흥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기금)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농림축산식품부 관리기금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 양곡관리법·시행령 (양곡증권정리기금)
		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 축산법 ·시행령 (축산발전기금)
		6.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관리기금)
		7.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대법원 관리기금	1. 공탁법·시행령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기금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국민체육진흥기금)
		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기금)
		4.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언론진흥기금)
		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영화발전기금)
		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청 관리기금	1.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기금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과학기술진흥기금)
		2.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기금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법무부 관리기금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

SAMPLE

구분		소관법률
기금관령법령	보건복지부 관리기금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기금)
		2.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기금)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응급의료기금)
	여성가족부 관리기금	1.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육성기금)
	외교부 관리기금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국제교류기금)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기금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금	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기금	1. 무역보험법·시행령 (무역보험기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전력산업기반기금)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통일부 관리기금	1.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
	해양수산부 관리기금	1.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발전기금)
	인사혁신처 관리기금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기금)
	환경부 관리기금	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금강수계관리기금)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강수계관리기금)
		5.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세 및 지방재정관련법령	조세 및 지방재정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시행령
		2. 소득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시행령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 관세법·시행령
		8. 인지세법·시행령
		9. 증권거래세법·시행령
		10. 주세법·시행령
		11. 교육세법·시행령
		12. 교통세법·시행령
		13.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5. 지방자치법·시행령

B&B Report

SAMPLE

Ⅱ.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2. 사회연대기금법안
		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청년세법안
	○	26. 탄소세법안
	○	27.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2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정보화기본법안
		6. 국립대학법안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노인체육진흥법안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4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1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정무위원회

1 사회연대기금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62호



이용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2.26. 제안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3조).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662호



김희곤

선 거 구 부산 동래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0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산업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 그러나 처벌 중심의 규제강화는 사업주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산업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결국,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원을 궁극적으로 줄이고,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을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규칙 및 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 등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6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732호



용혜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기본소득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12. 제안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임(안 제6조).

다. 탄소세의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이며, 2021년 4만원부터 2025년 8만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함(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0조).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외교관·조건부·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사.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7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733호



용혜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기본소득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12. 제안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그러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가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523호



류호정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04. 제안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음.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라.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마.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28조의4 신설).

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678호



박대수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1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510호



이수진

선 거 구 더불어민주당
정 당 비례대표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0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신설).

SPECIMEN

환경노동위원회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518호



임종성

선 거 구 경기 광주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04.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라.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SENATE

B&B Report

SAMPLE

Ⅲ.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행정기본법안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경제기본법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기초학력 보장법안
		10.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학력향상지원법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8.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데이터 기본법안
		10.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11.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연구산업진흥법안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30.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31.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5.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3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4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2.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1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립농업박물관법안
		4. 극지활동 진흥법안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9.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10.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8.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4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13.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2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31.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광업공단법안
		3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4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지역공공간호사법안
		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2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4. 공공건축특별법안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14.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06903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23. 제안
2021.02.23.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3.04.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8 신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의 범위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에게 발행하도록 함.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10 신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함.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347호



홍익표

선 거 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02. 제안
2020.07.2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2020.11.26. 상정
2021.02.04. 상정
2021.02.22. 상정/축조심사
2021.03.11.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7 신설).

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안 제48조의2 삭제).

주요발언

소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근 한 20일 동안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문자와 전화 폭탄을 수천 건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차단까지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다 받았을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똑같이 받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RPS 문제 2건인데요 여기에서 저에게 온 문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000여 건 되는데 이 중에 구십오육 % 이상이, 거의 99%가 휴무 문제입

니다, 휴무 문제. 휴무 문제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자가 아니라 전부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읍소였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의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구십칠팔 %가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휴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 온 법이 어쩌다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여기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로 변질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이 법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이견이 있으면 마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입법활동으로 왜곡되거나 매도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소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그다음에 산업부차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이 법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대충 정리해 보니까 이 법의 내용 중에 쟁점이 되는 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점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입점 규제에 대한 문제, 비교적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휴업 일수, 의무휴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첨예하게 찬반 양론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비교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삼사십 대 주부님들의 생각 또 이삼십 대 젊은 청년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담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규제 대상의 확대 문제인데요. 지금 대형마트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자라는 게 분명히…… 정책이 대개 보면 윤리성이 강한 법에는 참으로 찬반 양론이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자, 제한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국민을…… 여기에는 영업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자본이지요. 큰 자본,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대형매장 시설을 해 놓은 업체와 그다음에 결국은 경쟁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소비자 이익 문제입니다. 소비자 이익 문제에 와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개진해 주시고 또 부처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구하는 이런 노력을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송 간사님 말씀대로 이걸 여기서 하나하나 놓고 지금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서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610호



안호영

선 거 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22. 제안
2021.02.1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1.02.25.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등록·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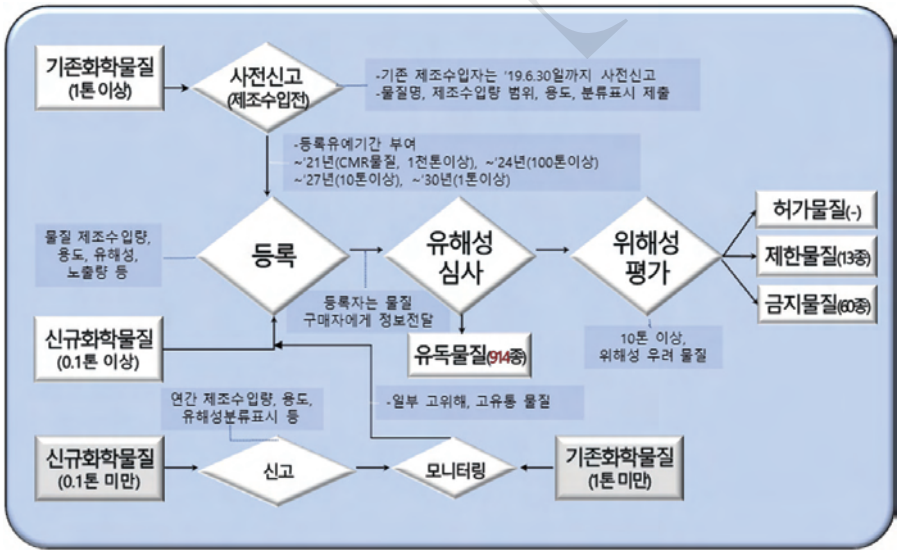
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 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43조의2, 제50조 및 제51조).

참고자료

1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요

(도입 배경)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 및 등록 책임을 부과

○ 기업은 제조·수입 전 해당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입증(등록)하고, 하위 사용자 등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등록·신고, §10)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1톤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하고 등록

※ 등록시 제출자료 : 제조·수입자의 정보, 화학물질 기본정보(명칭, 식별정보, 용도, 분류표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톤수별 9종 ~ 47종),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위해성 자료 등

(정보제공, §29)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정보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SAMPLE

B&B Report

SAMPLE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8.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1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소청법안
		21.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2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7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9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11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한국광업공단법안
		11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행정기본법안
		119.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갈등관리기본법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기본법안
		2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65.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7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0. 국립대학법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1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학력향상지원법안
		4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4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6. 디지털 포용법안
		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연구산업진흥법안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외교통일위원회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1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3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3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민자치 기본법안
		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의회법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생명안전기본법안
		49. 안전기본법안
		5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81.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8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5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농업박물관법안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극지활동 진흥법안
		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업회의소법안
		1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7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5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5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6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63.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한국광업공단법안
		69.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3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지역공공간호사법안
		5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6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6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3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6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3.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7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8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4.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5.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여성가족위원회		12.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정무위원회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07743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1.28. 제안
2021.02.16.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ii)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SAMPLE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ii)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ii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i)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ii)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i)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ii)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ii)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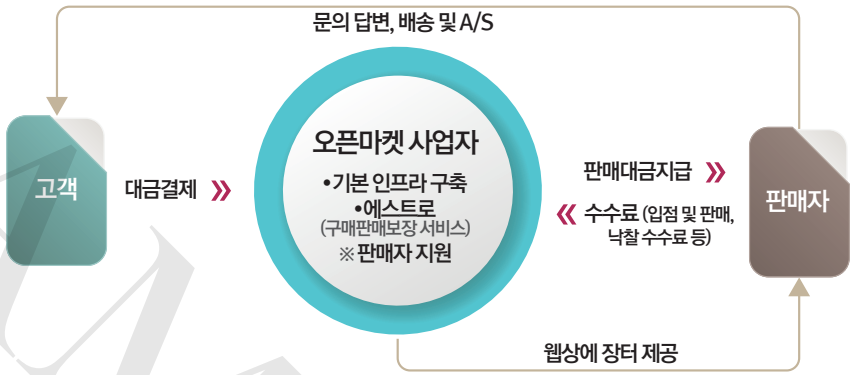
SAMPLE

참고자료

1 오픈마켓 현황

국내 오픈마켓 주요 3개 사[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이며, 3사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14년에 판매액 기준, 14조원을 넘어섰으며, 오픈마켓 이용 판매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11번가'로 2014년도 기준 약 22만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오픈마켓은 인터넷마켓(롯데닷컴, H몰 등)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의 장터(market place)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상품을 납품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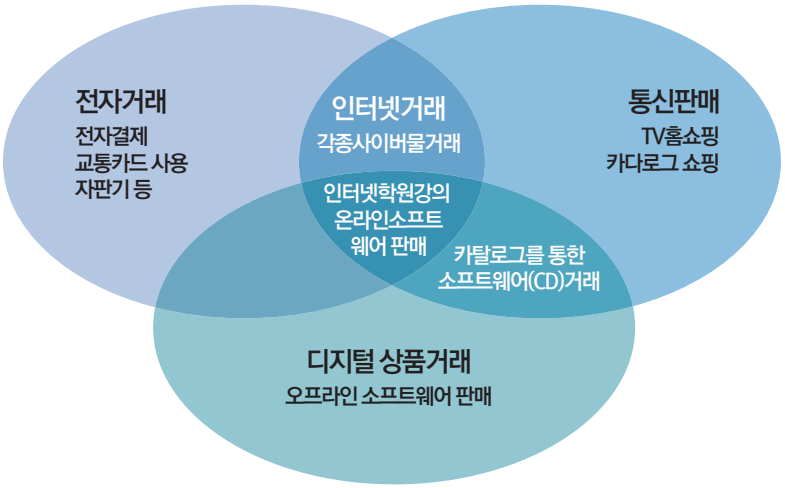
자료 : 이익현·배우헌(2012) "오픈마켓 내 사이트와 개별판매자에 대한 구매자 만족과 충성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4권 제1호 pp. 157-196.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 수익원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이며, 이외에도 판매자로부터 광고비 및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공간을 대여해 주고,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대금을 대신 받아서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정산한 후 잔여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정의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商行爲)을 말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시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예로 교통카드가 있음.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간의 관계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SAMPLE



[전자 상거래의 범위]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685호



송갑석

선 거 구 광주 서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9.09. 제안
2020.11.2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1.1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1.02.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VR·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서 역량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요청됨.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19. 4. 17.)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 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관계부처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77조제2항).

다. 특구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제79조 및 제81조).

라.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제5항 신설, 제86조).

SAMPLE

마.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8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바.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8조, 제90조, 제143조).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명문화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 사항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9조 및 제91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1조의3 신설).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73호



정태호

선 거 구 서울 관악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21. 제안
2021.02.23.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관계를 수탁·위탁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689호



윤미향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24.	제안
2021.02.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의2호 신설).

SAMPLE

주요발언

환경부장관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이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관련 업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예화 방식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를 할 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B Report

SAMPLE

V. 국회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통과 법률안 목록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PREVIEW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3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한국광업공단법안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행정기본법안
	6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48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0.0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0.0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02.26. 원안가결
2021.03.05. 정부이송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31조, 제33조~제

SAMPLE

35조, 제37조~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1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안 제80조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5건)

- [21028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 [210339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의원 등 11인)
- [21000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 [210284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 [21039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 02. 25 / 2020. 02. 26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의원** : 재석 230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30인(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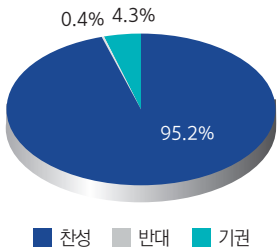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8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안 제80조의2제2항제1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임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SPECIMEN



의원별 정보

찬성 219인

강득구·강민국·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곽상도·구자근·권성동·권영세·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기현·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욱·金炳旭·김병주·김상희·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수·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판·김원이·김윤덕·김정재·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흠·김한정·김형동·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대수·박상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 정·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진교·배현진·백종헌·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서정숙·설 훈·소병훈·송갑석·송석준·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영대·신원식·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영환·용혜인·우원식·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의동·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상현·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주경·윤준병·윤창현·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규민·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영·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봉민·전용기·전혜숙·정동만·정운천·정일영·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명희·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조태용·조해진·주철현·지성호·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승재·최연숙·최종윤·최춘식·최형두·최혜영·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무경·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홍기원·홍석준·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반대 1인

류성걸 의원

기권 10인

강민정·권명호·김미애·박대출·박수영·오기형·이채익·정경희·정희용·한기호 의원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49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9. 회부
2021.0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본회의
2021.02.26. 원안가결
2021.03.05. 정부이송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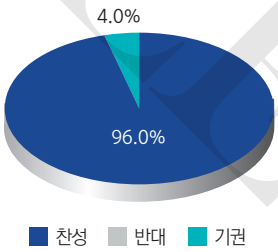
나.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2항).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21006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5인)
- [21032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8인)
- [21036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25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 02. 25 / 2020. 02. 26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의원** : 재석 227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27인(찬성 218인, 반대 0인, 기권 9인)



주요발언

〈상임위원회〉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오영환 의원, 이해식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 지반, 풍환경 등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심재 및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AMPLE

의원별 정보

찬성 218인

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용진·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기현·김두관·김미애·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욱·金炳旭·김병주·김상희·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수·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판·김윤덕·김정재·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흠·김한정·김형동·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대수·박상혁·박수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 정·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진교·배현진·백종헌·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석·서일준·서정숙·설 훈·소병훈·송갑석·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오영훈·용혜인·우원식·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의동·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상현·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주경·윤준병·윤창현·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규민·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종성·이채익·이철규·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봉민·전용기·전혜숙·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일영·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정희용·조명희·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조태용·조해진·주철현·지성호·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연숙·최인호·최종윤·최춘식·최혜영·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한병도·한준호·허 영·허종식·홍기원·홍석준·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보승희·황운하 의원

기권 9인

강민국·김승남·김은혜·박대출·변재일·이 영·이주환·최승재·최형두 의원

SAMPLE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47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9. 회부
2021.0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02.26. 원안가결
2021.03.12. 정부이송

제안이유

현행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렵고,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수령·보관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 반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라.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안 제68조의2 신설, 안 제71조 및 제7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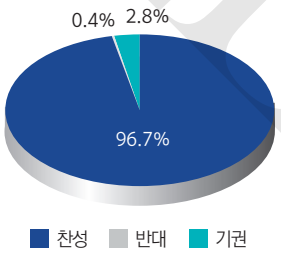
바.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6건)

- [21030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
- [21031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 [21027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21032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 [21053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0인)
- [2104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 02. 25 / 2020. 02. 26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의원** : 재석 246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46인(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7인)



주요발언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헌승(국민의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AMPLE

의원별 정보

찬성 219인

강득구·강민국·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영세·권은희·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기현·김두관·김미애·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金炳旭·김병주·김상희·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식·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판·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태흠·김한정·김형동·김홍걸·김회재·김희곤·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대수·박대출·박상혁·박성민·박수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진교·백종헌·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서정숙·설 훈·소병훈·송갑석·송석준·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원식·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금희·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상현·윤영덕·윤영석·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주경·윤준병·윤창현·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규민·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비)·이양수·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태규·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봉민·전용기·전재수·정경희·정동만·정일영·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승래·조오섭·조정식·조정훈·조태용·조해진·주철현·지성호·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승재·최연숙·최인호·최종윤·최춘식·최형두·최혜영·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무경·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홍기원·홍문표·홍석준·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보승희·황운하 의원

반대 1인

김 웅 의원

기권 7인

김은혜·배준영·신영대·용혜인·유의동·이낙연·이 영 의원

SAMPLE

P&B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 일정표

SAMPLE

용어 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SAMPLE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SAMPLE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SAMPLE

Policy & Business Report



SAMPLE

이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유형으로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는 국회 http://www.assembly.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국회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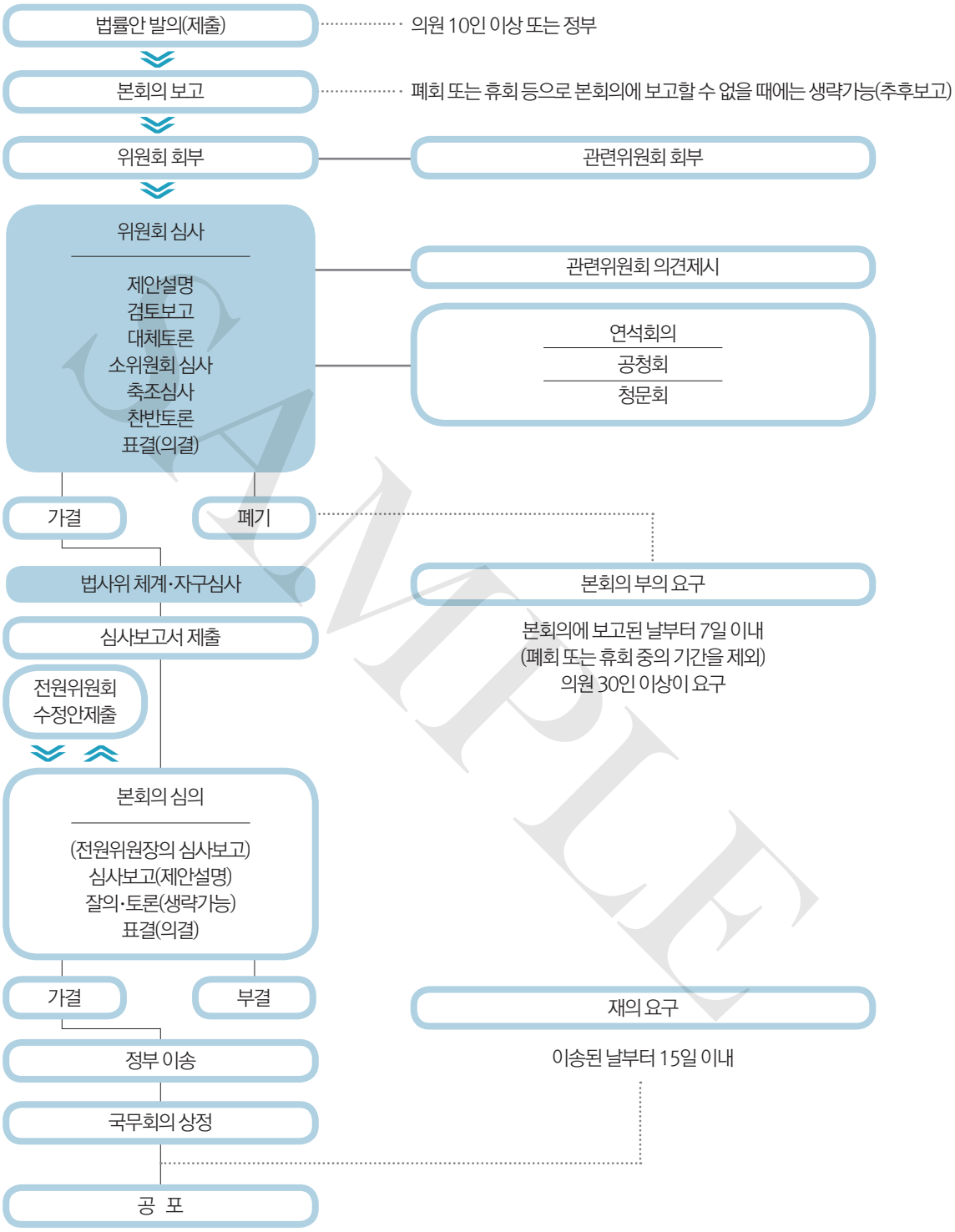
3월호는 2021.2.15.부터 2021.3.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384회 제7차 ●					385회 제1차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	●										
정무위원회		●	●				●	●	●											
기획재정위원회		●	●	●	● ●		●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	●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											
정보위원회		●	●			●														
여성가족위원회			●	●																
특별위원회																				

SAMPLE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